

신고서(스토킹행위자)

※ 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으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성명	주민등록번호 ※ 외국인의 경우: 국적·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) ※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: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※ 외국국적동포의 경우: 국적·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)
결정기관	결정일자

피해자와의 관계

1. 주소·연락처(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지,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)

주민등록주소	실제 거주지(주민등록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)		
☎(집전화번호)	☎(집전화번호)		
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	기타 연락처	
(문자서비스 []동의, []동의안함)			

휴대전화 문자서비스 관련 유의사항

전화번호 변경 시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, 수신된 각종 정보는 본인 책임으로 관리해야 하며, 휴대전화의 타인양도·분실 등 본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수신된 문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음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의 전자장치 부착 결정 사실이 공개된 범위	[]가족 []직장 []학교 []친구 []이웃 []친인척
우편물수령지	[]주민등록주소 []실제 거주지 []결정문주소 []직장주소 []기타 주소 (기타 주소:)

(뒤쪽)

2. 직업[무직이면 전직(前職)을 기재한 후 4. 신체 정보로 가십시오] ※ 전직:

직업	직장주소
직장명	☎(직장전화번호)

3. 직업 상세 사항

부서	근무형태	급여액	근무시작일
직위	[]주간 []야간 []2교대 []3교대 []기타()	만원	년 월 일
근무시간대	급여형태		
: ~ : (시간/일)	[]연봉 []월급 []주급 []일급 []시급		

4. 신체 정보

키	몸무게
cm	kg

5. 가족 사항

혼인 관련	[]미혼 []기혼 []동거 []별거 []이혼 []사별 []기타()				
관계	이름	나이	직업	연락처	비고

6. 차량 관련 사항

차량(원동기 포함)	차종	차량번호
[]있음 []없음	색깔	

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보호관찰(지)소장 귀하